

신혜원의 가정법 산책 >> 글보기
드라큐라(Dracula) 끌어내기

lawhwhshin on June 22, 2011

한국의 귀신을 쫓는 푸닥거리와 비슷한 놀이 풍습이 미국에도 있다. 10 월의 마지막 날, Halloween 이 그 것이다. 이 날에는 귀신, 유령같이 분장을 하고 집집마다 찾아가 'Trick-Or-Treat'을 외친다. 즉 귀신을 푸대접해 나쁜 일을 당하든지, 아니면 귀신을 대접해서 후한 없이 보내든지, 양자택일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거리가 어린이들이 분장을 하고 찾아오며, 'Trick-Or-Treat'을 외치면 준비한 초콜렛이나 캔디를 듬뿍 주면 된다.

나에겐 매년 Halloween 이 다가오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 이혼 소장 송달을 죽기 살기로 피하려고 공포 영화의 대명사, 흡혈귀 드라큘라(Dracula)를 자처한 H이다.

잠깐 법을 살펴보면, 소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소장 송달이라 할 수 있다. 소장 송달의 목적은 신청인이나 응답인에게 법원에 소장이 접수됐음을 알려, 자신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 가정법에서도, 소장 송달이 최종 판결만큼이나 중요하다. 첫째, 혼인 파탄의 과실, 책임을 따지지 않는 일방 이혼 신청 제도이나, 이혼 소장 송달이 이루어진 시기로부터 적어도 6 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될 수 없다. 둘째, 법원 공판 일자와 내용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양육비 등 이혼에 따른 제반 법적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이혼의 경우, 소장 송달은 이혼 신청인이 아닌 만 18 세 이상의 개인이 응답인에게 법원에 접수된 이혼 소장을 직접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혼 신청인이 응답인에게 소장 송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는 송달을 하지 않고도 했다고 하거나, 송달을 받고서도 안 받았다고, 서로 우기고 싸울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소장 송달은 주로 법원의 Marshall 이나, 송달 전문 회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소송에 연루돼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장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한 가정의, 누구 잘못이든, 자식을 뒷전으로 하고 깨지는 판국에, 단지 죽기 살기로 소장 송달만 피하고 보자는 행위는 감히 비겁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 한인 이혼 사례에 있어서도, 소장 송달을 목숨 바쳐 피하려고 발버둥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송달 전문 회사로부터 코미디 같은 전화나 리포트를 받곤 한다.

W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부모가 영어권이 아니어서 일일이 공부 봐 줄 형편이 아닌데도 학교에서 A 만 받아 온다. 큰 딸은 이제 10 학년. 대학 입시 준비 학원에 단 기간만 다녀도 큰 효과를 볼 듯싶다. 그게 부모 마음이다. H는 바람이 나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단다. 두 집 살림은 어려워니, 자연히 당장 마음 가고 몸이 머무는 새 살림집에 돈 쏟아 붓기 정신없다.

H가 양육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기다리다 지친 W. 이제는 정식으로 이혼 신청을 해서 법대로 양육비를 받았다고 변호사를 찾아 왔다. 이혼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고 송달 전문 회사에게 송달을 지시했다.

양육비가 급해 조만간 법원에 가야 하니 속성으로 송달할 것을 지시했다.

송달 마감 예정일, 송달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다. 목적지 주소에 갔지만, 한 여자가 나와서 "H가 그 곳에 살지 않는다."고. 여자가 미리 연락을 해서 H가 그 날 만큼은 송달을 일부러 피할 수 있으니, 일단 철수하고 다음날 다시 나갈 것을 부탁했다.

다음날, 송달 회사에 전화를 했다. H의 차가 집 앞에 주차 돼 있고, 집안에 있는 것이 분명한데 모든 창문과 커튼이 꼭꼭 닫혀있고 벨을 눌러도 문을 열지 않는다고 했다. 마냥 기다리랴 할 수가 없어 다시 철수하라고 했다.

이번에는, H가 집에서 나와 차를 타는 사이에라도 놓쳐서는 안 되겠기에 H의 사진을 송달 회사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것도 헛수고였다. 차는 계속 집 앞에 서있는데, 하루 온 종일 집 안에 사람 인기척도 없다는 것이다.

다음 날 아예 집을 치고 집 앞을 사수하라고 지시했다. 차도 그대로 있고 집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한데 창마다 빛이 들어갈 틈바구니 없이 커튼이 닫혀서 전혀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단다. 또 하루해를 넘기며 일단 철수했다.

그로부터 우리는 H를 햇볕에 노출되면 타 들어가며 멀하다는 흡혈귀 드라큘라(Dracula)라고 불렀다. W는 양육비가 급하다고 매일 전화하고, 드라큘라는 햇빛 안보기로 작성한 듯 장기 잠수를 타고. 송달회사도 변호사 뒤통에 바짝 열 받고.....

그러다 10월의 마지막 밤. 귀신 놀이 하는 Halloween이 되었다. 송달 회사도 이 날은 매니저가 직접 나섰다. 딸 둘이 있는 백인 엄마. 같은 엄마 입장에서 비열한 드라큘라를 끌어내 잡아야 말겠단다.

드디어 매니저는 9살, 7살 두 딸과 Halloween 분장을 하고 초콜렛 바구니까지 들고 드라큘라 집 벨을 눌러댔다. 당연히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때부터 매니저와 두 딸은 'Trick-Or-Treat'을 외쳐댔다. 엄마가 한 번 하면 아이들은 3번 4번 'Trick-Or-Treat,' 깔깔대며 노래를 불러댄다.

동네가 한 바탕 떠나가는데, 문손잡이가 돌아가며 문 뒤에서 희미하게 내미는 얼굴. 바로 사진 속의 드라큘라 얼굴이다. 이 때다. 매니저가 놓칠세라, "H씨, 부인이 보내는 이혼 소장입니다." 순간, 며칠 햇빛 한 번 못 본 드라큘라의 얼굴이 달빛 아래 허영다 못해 푸르러 졌다. 그렇게도 박쥐처럼 집안에 숨어 있던 H. 송달을 받고는 집 밖으로 걸어 나와 Trick-Or-Treat을 외치며 떼 지어 가는 어린이들과 매니저를 한동안 넋을 잃고 쳐다보더라는 것이다.

매니저, 아니 그 딸 둘 덕분에 나는 W가 가장 돈이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첫 양육비를 받아 냈다. 송달을 피하려다 드라큘라라고 낙인까지 찍히고..... 그 시간과 정력을 양육비의 일부라도 자진해서 내기 위해 썼더라면, 법정에 서기도, 또 훗날 자식을 볼 때도 덜 부끄럽지 않을까 싶다. (끝)

*본 기사의 저작권은 신혜원이 소유함을 명시합니다.

** 위의 기사는 본 변호사와 관련된 특정 의뢰인의 실제 사례가 아니며, 본 기사를 위하여 가상인물 및 상황을 설정, 사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